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변 호	
------------	--

제안연월일 : 2025. 11.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479	이수진	2024. 11. 12.	2025. 1. 14.
	2208968	이수진	2025. 3. 14.	2025. 8. 18.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9. 22.)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5. 9. 24.)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종 마약의 출현과 마약 범죄의 수범이 빠르게 증가·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수립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절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립 시의 절차에 따라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3제2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3(마약류관리기본계획) ① (생 략)	제2조의3(마약류관리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중 합하여 제2조의4에 따른 마약 류대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u><후단 신 설></u>	② ----- ----- ----- ----- ----- ----- ----- ----- -----, <u>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u>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